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 등을 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 신설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33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 등을 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 신설	3
※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을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 24.
3. 회 부 일 : 2025.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여 적발된 인원이 총 269명에 이르며, 특히 학교에서 적발된 사례가 2021년 단 2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경기도 내 초등학교 5곳에 취업한 뒤 재직 중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교육청의 연 1회 정기점검에서 뒤늦게 적발된 사례를 확인함.

이 같은 문제는 현행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자를 직접 처

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 등을 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 신설

개정안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2. 제56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성범죄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5. (생략)

경력 조회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²⁾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³⁾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교육감 등 행정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근무 중인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고,⁴⁾ 점검·확인 결과 취업제한

-
- 2)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④ 제1항 각 호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3)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과태료)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략)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7. (생략)
-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한 자에게는 운영 중인 기관의 폐쇄요구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그리고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폐쇄, 등록·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⁶⁾, 종사자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⁷⁾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자는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5) 「**청소년보호법**」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6) 2025년 2월 19일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7) 「**청소년보호법**」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③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고 있음. 이들은 취업제한 대상 여부 사전 조회 및 행정기관의 사후 점검·확인 과정을 통해 기관 운영이나 취업 상태에서 배제됨으로써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받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실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취업제한 여부 점검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약 57만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7명을 적발하였고, 매년 적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취업제한 여부 점검 조치 결과 >

(단위: 개소, 명)

구분	점검대상		적발인원	조치 사항
	기관	인원		
2021년	533,315	3,382,478	67	종사자 해임 39 기관폐쇄 28 (운영자 변경 9)
2022년	549,038	3,418,865	81	종사자 해임 43 기관 폐쇄 38 (운영자 변경 16)
2023년	548,600	3,755,360	121	종사자 해임 75 기관폐쇄 46 (운영자 변경 10)
2024년	567,021	3,905,217	127	종사자 해임 82 기관폐쇄 45 (운영자 변경 12)

주: 기관폐쇄는 양도·양수 등으로 운영자를 변경한 경우와 기관이 폐쇄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취업제한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범죄구성요건과 그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는 현행법에서 “사실상 노무 제공”의 의미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⁸⁾ 처벌 대상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이 55만 개가 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⁹⁾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기관이 어딘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매년 점검·확인하고 있고 그 결과 종사자 해임이나 기관 폐쇄요구를 하였을 때 대부분 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고

8)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 아동·청소년 대상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강사, 교생실습 등)는 정기적 제공여부는 제공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성범죄 경력조회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2) 간접 노무(단순 노무) 제공의 경우 ① 보호대상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 ② 취업제한 기관 관계자의 노무 감독 여부, ③ 노무가 제공되는 주기, ④ 노무제공 시간(취업제한 기관에 머무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범죄 경력조회의 대상 여부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함.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024.2, 41쪽 참조]

9) 2025년 2월 19일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있는 성범죄자에게 추가적인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법률에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¹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¹¹⁾에 처하도록 하는 등 취업제한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사례도 있으나,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 4. (생략)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 6. (생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법 보호대상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은 취업제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종합하면,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직접 벌칙을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가 불명확하다는 점, 취업제한 기관이 광범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는 그 의미나 범위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제56조제1항	적용기관	점검기관
1. 유치원	유치원	교육청
2.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과기부, 교육청
	위탁교육기관(학습부진관련)	교육청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교육부
2-2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위센터, 위스쿨 등)	교육청
2-3 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교육청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원 제외,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육청
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여가부
5.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용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과학관,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등	문화부 등 지방자치단체
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여가부 지방자치단체
6-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7.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방자치단체
8.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다함께돌봄센터	지방자치단체
9.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지방자치단체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1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지방자치단체
11.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중 문화부장관이 정한 시설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	지방자치단체

제56조제1항	적용기관	점검기관
12.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	지방자치단체
13. 게임(시설)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14. 경비업 법인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경찰청
15.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지방자치단체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지방자치단체
17.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18.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여가부
19.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교육청
20.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행안부장관 지정시설	지방자치단체
21.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조례 등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교육청
22.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23.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
24.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3.18),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전수 점검 실시”,